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8가단68668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피고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7. 21.

판결 선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3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에어컨판매 및 냉난방설비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와 서울 강서구 E 연구시설 내 신축공사 현장에 기계설비공사외 용역납품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3. 23.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시스템냉난방기 등의 자재납품 및 시공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및 설치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기간 : 2018. 3. 23. ~ 2018. 6. 30.

○ 공급품목 및 규격·수량 : 별첨 세부 내역서 기준

○ 계약금액 7,480만 원(= 공급가액 6,800만 원 + 부가가치세 680만 원), 대금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880만 원 지급, 매월 말 기성 청구하여 익월 말 90%의 기성금 지급, 준공·시운전 후 30일 이내 잔금 지급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3. 30. 계약금 880만 원, 2018. 4. 30. 3,300만 원, 2018. 9. 10. 385만 원(카드결제), 2018. 11. 26. 33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8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액 중 미지급 부분

이 사건 소 제기 전 공사가 완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고(다만 원고가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F 및 피고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였는지 다툼이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합계 4,89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7,480만 원 중 미지급한 2,585만 원(= 7,480만 원 - 4,8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비용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멀티에어컨 동신자재 추가 비용 27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유선리모컨 비용 1,815,000원, 멀티에어컨 동관 및 인건비 추가, 전열교환기 자재 추가 비용 12,936,000원, 3건 합계 17,501,000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유선리모컨 1,815,000원 부분 피고는 을 제1호증 중 시스템냉난방형케어공사 견적서의 내역서에 '유선리모컨<환기>' 항목이 있으므로 추가 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2019. 11. 12.자 준비서면, 이하 피고의 주장부분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위 준비서면에 따른다). 그러나 위 내역서의 항목은 그 기재된 위치와 수량에 비추어 같은 견적서 바로 위에 기재된 항목인 전열교환기의 유선리모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에어컨 유선리모컨 부분도 견적서나 당초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는 에어컨 유선리모컨을 공급받은 사실도 부인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에어컨 유선리모컨 10개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머지 추가 공사비용 275만 원 및 12,936,000원 부분 가) 갑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1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1층과 7층에 각 1대의 에어컨 멀티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가 공사 진행 중 7층에 2대의 에어컨 멀티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되어 그와 같이 시공된 사실, 당초 환기 덕트의 사양이 흡음 플렉시블 덕트로 되어 있었다가 스파이럴 덕트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경은 자재비 변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가 멀티실외기 1대의 위치가 변경된 후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동관은 2.2m가 늘어났고 덕트는 0.6m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추가 공사비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자재비가 추가되고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동관 등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된 품목, 물량과 단가, 추가 공급 일시와

상대방 등을 밝히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환기설치공사와 관련한 항목에 스파이럴 덕트와 플렉시블 덕트(을 제1호증 중 내역서의 '스파일러 덕터', '후레시볼 덕터'도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가 모두 들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 위 플렉시블 덕트가 스파이럴 덕트로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물량과 단가의 차이 등이 계산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부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증거에 기재된 자재나 인력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위 각 증거의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맞춰지지도 않는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자재 추가 275만 원'이 어떤 자재인지조차 알 수 없고, '12,936,000원 부분'에 관한 계산의 근거도 알 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한 금액과 내역도 일관되지 않다(을 제11, 12호증).

나) 다만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서 여기에 공사 내역서와 F의 견적서를 첨부한 사실, 위 공사 내역서 하단에 "이 부분만 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재 부분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기재 부분의 작성자와 그 취지가 명백치 아니할뿐더러, 위 공사 내역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메일로 보낸 "E현장 추가상황20180717"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중 하나와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점(을 제11호증),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피고는 '에어컨 1대 추가' 외에 추가공사가 없다는 전제에서 공사잔금을 계산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공사 내역서의 추가공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청인 주식회사 D과 피고가 한 계약금액이 당초 7억 5,900만 원이었는데, 222,442,000원이 추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추가 지급과 원고가 한 공사 부분과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갑 제12호증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사대금으로 32,266,400원을 수령하였다고도 주장한다(2019. 7. 18.자 준비서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2,265,600원은

원청사와의 최초 계약 이후 실내기 5대가 증가하고, 멀티실외기 2대가 신설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데,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이 추가된 부분이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체결되어 있다고 다룬다.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갑 제12호증을 원고의 추가 공사비용 지출 증거로 삼기 어렵다.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가 인정하는 부분(동관 2.2m)을 초과하는 자재가 추가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 공사비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다음 항목을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없다.

- 1) F의 스파이럴 덕트 및 디퓨저 공사대금 1,320만 원, G, H 드레인 배관공사 인건비 200만 원: 원고가 2018년 6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의 재개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F 및 일용직 근로자 G, H를 통해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 2) 전열교환기 1대분 37만 원: 전열교환기 21대 설치 계약을 하였으나 원고는 20대만 설치하였다.
- 3) 멀티실외기 1,168만 원: 원고는 설치되어 있던 멀티실외기를 몰래 가져갔다.

나. 스파이럴 덕트 및 디퓨저, 드레인 배관공사 관련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 금액 상당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해체한 후 다시 F 등을 통해 이 부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보건대,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와 함께 스파이럴 덕트 및 디퓨저 공사를 하였고, 위 공사가 완성된 것을 보았으며, 그 이후 J에서 수냉식 에어컨을 설치한 다음 다른 공사를 하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갔을 때에는 스파이럴 덕트 및 디퓨저가 모두 해체되어 바닥에 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한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비용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 부분 공제를 인정할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전열교환기 1대분 단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첨부 전열교환기공사 견적서의 내역서에 전열교환기 수량이 합계 21대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 2)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열교환기는 처음부터 20대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전열교환기 20대를 설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다. 한편 위 내역서를 고려하여 견적서의 견적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나, 견적금액(3,800만 원)과 내역서의 총합계 금액(45,580,800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전열교환기의 수량과 단가 등에 비추어 보면, 내역서 중 전열교환기 1대의 증감이 견적금액이나 나아가 이 사건 계약 금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고려사항이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3) 위 2)의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 1)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가액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멀티실외기 공사대금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2. 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하였던 멀티실외기 2대, 추가공사한 실외기 1대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가져간 멀티실외기 등을 복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멀티실외기 등의 대금 상당액은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스템냉난방형케리어공사 견적서의 내역서상 멀티실외기 2대의 금액은 1,168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견적서상 견적금액은 3,000만 원이고 내역서 총합계 금액은 30,521,000원이므로, 내역서의 1,168만 원은 견적금액 11,480,619원($= 1,168\text{만 원} \times 3,000\text{만 원} / 30,521,000\text{원}$, 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에 상당한바, 공제금액은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2,628,680원(=

11,480,619원 × 110%)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주장하는 공제금액 1,168만 원을 초과하나, 피고 주장은 부가가치세 가산 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앞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인정한바, 피고가 이러한 경우에도 공급가액 기준 공제금액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공제금액에 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가산한다). 따라서 위 인정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위 멀티실외기 등을 구매한 가격인 6,209,091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금액 중 이 부분이 위 12,628,680원에 상당한 이상 이 부분 누락으로 인한 공제금액도 이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피고의 공제 주장은 멀티실외기 공사대금과 관련한 12,628,680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이를 공제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13,221,320원(= 2,585만 원 - 12,628,680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22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로 보이는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아